##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

의안 번호 1676

제안년월일: 2017년 2월 24일

제 안 자: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 1. 주 문

○ 국가에서 지정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간 미집행될 경우 "사유재산권 보장" 차원 에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하기로 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가 2020년 7월로 다가왔음.

○ 공원은 도시계획시설로 공원 유지를 위해서는 사유지 매입을 위해 재정이 확보 되어야 하나, 자치단체 재정여건으로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재정지원이 필요하 며,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시 재산세 감면이 해당되지 않아 민원발생이 예상됨. 따라서 국비 지원 및 세금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함.

#### 2. 제안이유

- 대부분 도시공원은 1970년 이전 국가에서 지정하여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하던 도시 계획 시설이나, 장기미집행 공원의 경우 2020년 7월 공원구역에서 해제되게 되었음.
- 공원구역 해제시에는 개발에 노출 되어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주요 녹지가 훼손 될 가능성이 크므로,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 서울의 경우 도시환경을 더욱 더 악화시키게 됨으로써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함.
- 서울시는 공원 확보를 위해 1조 7,49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유지를 매입하였지만(4.72k㎡) 여전히 매입하지 못한 40.3k㎡의 사유지가 남아있어 국비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 또한 현재 공원의 사유지는 재산세 50%를 감면받고 있으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할 시에는 재산세 감면이 없어 행위규제는 지속되지만 경감되었던 세재 혜택이 없어지므로 토지주의 경제적 부담과 납세 불만 등의 민원이 예상되어세금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없음

#### 4. 이 송 처

가. 국 회 : 국회의장

나. 정 부 : 대통령실,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에 대비한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 및 제도개선 건의안

2020년 7월 이전까지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될 예정 이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이 실효 될 경우 도시의 허파기능을 하는 주요 녹지는 난개발 등으로 훼손 될 가능성이 크므로, 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1970년 이전 국가에서 지정하여 국민들에게 공원녹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결정한 도시계획시설이나, 지방자치단체로 공원사무가 이관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보상비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실효시기가 가까이 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적인 보상재원 확보 노력만으로는 공원 실효에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중앙 정부의 국비지원 및 제도개선 등 국가차원에서의 다각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서울시의 장기미집행 시공원은 71개소 94.6km 이며, 이중 사유지는 40.3km 로 사유지 보상을 위해서는 약 11조 6,785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서울시에서는 부족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2002년부터 현재까지 4.72km 면적을 보상하였으며 1조 7,495억원의 예산으로 공원녹지를 확보하였다.

2016년에는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원 해제의 심각성에 대해 공감하고 보상예산을 대폭 증액하고자 노력한 결과, 2017년에는 전년도 대비 70% 증가(1,018억원)한 예산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매년 최소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원 실효에 대비할 계획이나, 서울시의 예산만으로는 공원 실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원사무는 당초 중앙정부의 사무였으나, 1994년 지방자치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중앙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공원업무가 이관될 때 국유지의 소유권도 이전되었어야 했으나, 서울시의 경우 1970년대 이전에 국가에서 지정한 공원 71개소 중 국유지 면적 35.6km²은 여전히 중앙 정부가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 국유재산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공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무상양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제라도 중앙 정부는 미집행 공원 중 국유지의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고, 지방 자치단체로 공원사무를 이관하기 전에 지정한 공원에 대해서는 국비지원을 하는 등 장기미집행 공원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 이다.

현재 공원 등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 토지, 지상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 받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장기미집행 공원 중 일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 경우, 행위 규제는 지속됨에도 그동안 경감되던 세금이 새롭게 부과되는 상황으로, 토지 소유주의 경제적 부담과 납세 불만 등 민원발생이 예상되므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세금경감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바이다.

###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특별위원회는 2020년 7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중앙정부가 지정한 공원용지의 보상을 위해 국비를 지원한다.

하나, 국유지를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양여하여 공원용지로 유지하도록 한다.

하나, 공원해제 후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되는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2017. 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